

2020년 2월 28일
출입국체류관리청

코로나 19 감염확대 방지를 위한 창구 혼잡 완화 대책

코로나 19 확산 사태에 직면해 감염 확대를 방지하고, 접수처의 혼잡을 막고자 접수기간을 확대 운영합니다. 3 월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체류외국인 (체류자격이 「단기체류」 및 「특정활동 (출국준비기간)」 은 제외) 은 체류기간만료일로부터 1 개월후까지 체류변경허가신청 및 체류기간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(주) 일본 출생자 등 3 월 중 체류자격 취득 신청을 해야 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.